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택배서비스종사자 법정 업무시간 규정 등 〉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46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문위원 임 종 수

목 차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2205946)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택배서비스 재위탁 금지(안 제8조의2, 제51조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8
1) 국토교통부	8
2) 한국통합물류협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8
2.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조치 시 계약해지 간주(안 제11조제1항)	10
가. 개정안의 내용	10
나. 검토의견	10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3
1) 국토교통부	13
2) 공정거래위원회	13
3) 한국통합물류협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14
3. 표준계약서 내용 구체화 및 이에 우선하는 계약 체결 금지(안 제32조 제2항)	15
가. 개정안의 내용	15
나. 검토의견	16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22

1) 국토교통부	22
2) 공정거래위원회	22
3) 한국통합물류협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3
4. 서비스평가 기준에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의 안전 추가(안 제35조제2항)	25
가. 개정안의 내용	25
나. 검토의견	25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28
1) 국토교통부	28
2) 한국통합물류협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8
5. 택배서비스종사자 법정 업무시간 규정(안 제36조의2 및 제49조제5호 신설)	30
가. 개정안의 내용	30
나. 검토의견	31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33
1) 국토교통부	33
2) 고용노동부	33
3) 한국통합물류협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34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220594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종오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27.
3. 회 부 일 : 2024.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종사자의 과로사가 잇따라 일어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택배종사자의 과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나아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계약기간, 위탁업무의 범위 등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지 않은 위탁계약서를 사용하고, 위탁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영업점의 위탁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해 택배종사자의 고용불안과 과로를 야기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포함해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또한 택배서비스사업자

가 택배종사자의 집화, 배송 등 계약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제11조제1항 신설 등).

아울러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에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의 안정성을 추가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종사자 안전 확보 의무화와 업무시간 범위를 1주 60시간으로 한정하여 택배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제6호 신설, 제36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택배서비스 재위탁 금지(안 제8조의2, 제51조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 영업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택배서비스종사자로 하여금 각각 이를 다른 영업점, 다른 종사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종사자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만일 이를 위반하여 재위탁하는 영업점 또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u>제8조의2(택배서비스의 재위탁 금지)</u>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영업점에 재위탁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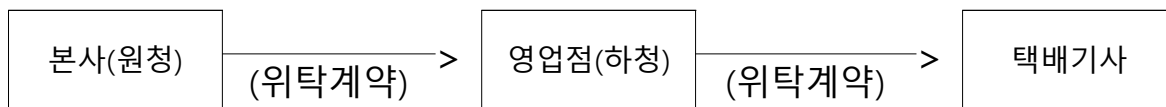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설> <신설> 3. ~ 14. (생략) ② (생략)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영업점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영업점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업점이 택배서비스종사자와 체결한 위탁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제51조(과태료) ①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한 영업점 2의3.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한 택배서비스종사자 3.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택배서비스사업의 거래구조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보다 영업점에 위탁하여 영업점과 택배기사 간 운송위탁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다수임.

【택배기사의 운송업무계약 현황('18 교통연, 택배서비스산업 일자리 실태조사 분석)】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배종사자는 영업소와 계약하는 경우가 83.0%, 택배서비스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는 17.0%로 택배서비스사업자-영업점 간, 영업점-택배종사자 간 계약이 주로 체결됨.

【택배서비스종사 위수탁계약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

그런데 이와 같은 위탁계약 외에 영업점이 다른 영업점에게, 또는 종사자가 다른 종사자에게 재위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위탁받은 영업점에서 종사자가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택배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시키거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에게 배송 지시를 하는 등 택배업무의 재위탁으로 인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¹⁾된 바 있음.

또한, 재위탁으로 인하여 다단계 구조가 형성되면 최초로 위탁받은 영업점 또는 종사자는 계약금액에서 일부를 제하고 다른 영업점, 종사자에게 재위탁하게 되어 자칫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점 또는 종사자에게는 저보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물류비가 상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택배업무의 재위탁을 금지하되, 종사자가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위탁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위탁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다단계 구조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업계에서는 이처럼 재위탁이 금지되는 경우 배송인력의 공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2024.10.22.) 회의록 p.53-54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안 제8조의2제2항의 단서와 관련하여 법 제12조²⁾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 계약을 통해 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법 제4조제1항³⁾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⁴⁾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의 운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령에 위임하고, 동법 시행규칙⁵⁾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2조(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통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대행하게 하는 행위, 즉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안 제8조의2제2항 단서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로 하여금 재위탁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영업점 간 물량 재위탁 등은 경영상의 영역으로 재위탁으로 인한 수수료 편취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재위탁을 금지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한편, 택배서비스종사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해당하고 물량 재위탁 금지가 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에서 별도 규정할 개정 실익이 적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한국통합물류협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특별한 이유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오히려

간 동안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처리해온 현실적인 이유와 장점을 무시하고, 개별적인 계약조건들을 법률로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불가피한 상황에서 종사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통상 일시적이고 시급한 경우이므로 평균보다 우월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정안과 같이 거래의 조건을 제한할 경우 배송업무 재위탁이 필요한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원활하게 업무를 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할 것임.

또한, 배송인력의 공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소비자에게 약속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중소 배송사는 사업경영상의 어려움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조치 시 계약해지 간주(안 제11조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영업점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계약해지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신설>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생략)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①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조치로 인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영업점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모두 계약해지로 본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2항에-----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⁶⁾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종

6)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영업점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조치가 계약 해지로 간주되도록 하여 그러한 조치를 하려면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여 그러한 조치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최근 일부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소 물량 또는 고정적인 물량의 위탁을 보장하지 않고 위탁 구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지연배송 등을 이유로 그 구역을 회수할 수 있는 이른바 클렌징(배송구역 회수) 제도를 운영하였고,

이와 같은 영업점에 대한 배송구역 회수가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사실상 해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가 택배서비스종사자 과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⁷⁾⁸⁾.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7) 택배 사회적 합의의 평가와 쿠팡CLS의 참여에 대한 국회 토론회(2023.9.6.),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2024.8.14.)

이를 종합할 때, 클렌징 제도에 따른 배송구역 회수 조치로 인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영업점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개정안은 이를 계약 해지로 보아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제11조제1항과 현행 제11조제2항의 해석이 이와 같은 취지처럼 해석될 것인지는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고, 택배사업자의 일정한 조치가 곧 계약해지로 간주되는 것이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현행법 제11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계약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이렇게 설계된 쿠팡의 계약서에 따르면, 쿠팡에서는 2회전 배송율, 신선식품 배송율, 월 수행률(당일배송율), 휴무일배송율, 명절 당일배송율, 배송마감시간 미준수를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에도 대리점으로부터 구역을 회수(클렌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해당 구역의 택배노동자는 구역과 물량이 사라져 수입이 '0원'이 되는 사실상의 해고 상태에 처하게 됨.

8) KBS뉴스, 새벽 5시 24분,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로켓배송’ 기사의 죽음, 2024.7.4.

“■ 유족·대책위, ‘구조적 문제’ 지적...쿠팡CLS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정 씨가 이처럼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된 데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게 유족과 대책위 측 주장입니다. ... (중 략) ... 또, 배송 마감시간 정책을 운영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던 미스(Done-Miss)’로 분류해 이른바 ‘클렌징’, 배송 구역 회수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던 미스 ‘0.5% 이상’일 경우 구역을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택배기사들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월간노동법률, 반복되는 ‘쿠팡 과로사’ 의혹...“사회적 합의 무시·생활물류법 위반이 원인”, 2024.7.3.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24&in_cate2=0&gopage=1&bi_pidx=36862

“서비스연맹은 정 씨의 과로사 배경에 쿠팡의 ‘클렌징’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클렌징이란 쿠팡이 하청 택배 대리점에게 배송률 미달 등을 이유로 지역의 택배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고인이 ‘개처럼 뛰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일을 바쁘게 해야 했던 이유는 클렌징에 있다”며 “쿠팡과 영업점의 계약서상 배송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한 물량이 0.5%가 넘으면 영업점이 클렌징당해 배송기사도 일자리를 잃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클렌징을 무기로 과로를 유발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영업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일 뿐 배송기사 해고와는 무관하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쿠팡의 클렌징이 개선되지 않으면 배송기사들의 과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운송 위탁계약은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간의 삼자 계약이 아닌 사업자와 영업점, 영업점과 종사자 간 각각 체결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영업점 간 조치로 종사자의 업무수행이 제한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에 따른 계약 해지 등 조치가 적절하고, 모든 경우 예외 없이 모두 계약 해지로 규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공정거래위원회

안 제11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자의적인 조치로 인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업무수행이 곤란해지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할 때,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근거로 악용되어 종사자가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한 종사자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려는 제2항의 내용 및 취지와 모순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며(제9조 제3호),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함(제12조 제1호).

3) 한국통합물류협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계약해지는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안으로서 해지 사유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개정안에 따른 '택배서비스 사업자의 조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은 문구는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저하 내지 명확성의 원칙이 결여된 조항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택배종사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택배사업자가 영업점에 종사자의 업무시간 관리를 요청하고, 영업점에서 그에 대한 조치로 배송시간 등을 제한했을 시에도 해당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조항 위반이 될 수 있음.

또한, 택배사업자의 조치에 따라 영업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 인지는 영업점이 운영 방법 및 현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므로, 현재 영업점-택배기사의 위탁 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배송구역, 배송물량 등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으나, 해당 조항으로 인해 계약구조가 경직되어 오히려 종사자들의 원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조율할 수 없어 종사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음.

3. 표준계약서 내용 구체화 및 이에 우선하는 계약 체결 금지(안 제32조 제2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으로 하여금 표준계약서에 집화 및 배송구역,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분류업무에 참여하는 경우 그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그 표준계약서의 효력에 우선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사실상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표준계약서) ① (생략) <u><신설></u>	제32조(표준계약서) ① (현행과 같음) <u>② 택배서비스 사업자 및 영업점은 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표준계약서의 효력에 우선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u> 1. 집화 및 배송구역 2. 집화, 배송수수료 및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분류업무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 3.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부칙
<u>② (생략)</u>	

현행	개정안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일부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소 물량 또는 고정적인 물량의 위탁을 보장하지 않고 위탁 구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지연배송 등을 이유로 그 구역을 회수할 수 있는 이른바 클렌징(배송구역 회수) 제도를 운영하였고,

이와 같은 영업점에 대한 배송구역 회수가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사실상 해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가 택배서비스종사자 과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음⁹⁾¹⁰⁾.

9) 택배 사회적 합의의 평가와 쿠팡CLS의 참여에 대한 국회 토론회(2023.9.6.),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2024.8.14.)

- 이렇게 설계된 쿠팡의 계약서에 따르면, 쿠팡에서는 2회전 배송율, 신선식품 배송율, 월 수행률(당일배송율), 휴무일배송율, 명절 당일배송율, 배송마감시간 미준수율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에도 대리점으로부터 구역을 회수(클렌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해당 구역의 택배노동자는 구역과 물량이 사라져 수입이 '0원'이 되는 사실상의 해고 상태에 처하게 됨.

10) KBS뉴스, 새벽 5시 24분,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로켓배송’ 기사의 죽음, 2024.7.4.

“■ 유족·대책위, ‘구조적 문제’ 지적...쿠팡CLS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정 씨가 이처럼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된 데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게 유족과 대책위 측 주장입니다. ... (중 략) ... 또, 배송 마감시간 정책을 운영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던 미스(Done-Miss)’로 분류해 이른바 ‘클렌징’, 배송 구역 회수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던 미스 ‘0.5% 이상’일 경우 구역을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택배기사들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월간노동법률, 반복되는 ‘쿠팡 과로사’ 의혹...“사회적 합의 무시·생활물류법 위반이 원인”, 2024.7.3.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24&in_cate2=0&gopage=1&bi_pidx=36862

“서비스연맹은 정 씨의 과로사 배경에 쿠팡의 ‘클렌징’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클렌징이란 쿠팡이 하청 택배 대리점에게 배송률 미달 등을 이유로 지역의 택배 위탁을 일방적으로

이에 안 제32조제2항제1호는 표준계약서에 집화 및 배송구역을 명시하도록 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안정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¹¹⁾.

【 택배사업자 - 영업점 위·수탁 표준계약서 제5조 】

제5조(담당 위탁지역) ① 택배사업자는 예상 물량 등 시장 상황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영업점과 합의를 거쳐 담당 위탁지역을 설정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영업점에게 담당 위탁지역에 관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택배사업자는 담당 위탁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점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영업점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담당 위탁지역 조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택배사업자는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다음 제2호와 관련하여 집화·배송 수수료는 계약내용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주요한 조건이고, 택배기사의 분류업무 수행이 과로의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난 2021년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 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수행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음.

이에 안 제32조제2항제2호는 집화·배송 수수료 및 분류업무 수수료를 명시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¹²⁾.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고인이 '개처럼 뛰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일을 바쁘게 해야 했던 이유는 클렌징에 있다"며 "쿠광과 영업점의 계약서상 배송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한 물량이 0.5%가 넘으면 영업점이 클렌징당해 배송기사도 일자리를 잃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광은 클렌징을 무기로 과로를 유발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영업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일 뿐 배송기사 해고와는 무관하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쿠광의 클렌징이 개선되지 않으면 배송기사들의 과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1) 참고로, 현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택배서비스사업자-영업점 간 표준계약서 제5조는 담당 위탁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영업점 - 택배기사 위·수탁 표준계약서 제4조 】

제4조(계약의 주요내용) ① “위탁자”와 “수탁자” 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_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____개월)
담당구역		
수수료	집화수수료	1건당 _____원 또는 택배사업자 - 영업점 간 수수료 기준 금액의 _____%
	배송수수료	1건당 _____원 또는 택배사업자 - 영업점 간 수수료 기준 금액의 _____%
	지급일	매월 ____일
기타	차량내역	자동차 등록번호 _____
	종사자격	종사자격증 번호 _____

② “수탁자”는 집화, 배송 외에 분류작업을 수행 / 미수행 한다.

③ 전항에 따라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분류수수료는 시간당 _____원으로 한다. 단, 분류된 화물을 택배차량에 상차하는 시간(____시간)은 분류수수료 지급시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제3항의 분류수수료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2차, '21. 6. 22)」에 따른 분류인력 투입비용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안 제32조제2항제3호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역시 택배 서비스사업자-영업점 간 표준계약서 제9조 및 제16조와 영업점-택배서비스기사 간 표준계약서 제10조 및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음.

12) 참고로, 영업점-택배서비스종사자 간 표준계약서 제4조는 이와 같은 수수료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택배사업자 - 영업점 위·수탁 표준계약서 제9조 · 제16조 】	
제9조(사고처리와 손해배상책임) ①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사유 있는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화물의 분실, 멸실, 훼손, 운송지연 등(이하 “화물사고”라고 한다)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화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각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 중 일방이 고객에게 우선 배상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택배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주체를 판단하거나 손해배상책임 부담 기준을 정하는 지침(이하 “사고처리 지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책임을 영업점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사고처리 지침에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택배사업자는 사고처리 지침을 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영업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사고처리 지침을 수정·변경하려는 때에는 영업점(혹은 영업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⑥ 화물사고에 대하여 택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부담 비율을 판정하는 경우 영업점에게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영업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____ 영업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사항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행정적 처분이 있는 경우 3.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화물자동차 운송 및 생활물류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자칫 취소 등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4.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5.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이 합의하여 중요사항이라고 정한 다음 각 목의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 이 외에 사유로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실이 중대 명백한 경우 ④ 택배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물량의 현격한 축소 등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 영업점 - 택배기사 위·수탁 표준계약서 제10조 · 제11조 】	
제10조(손해배상) ① 택배화물의 훼손, 멸실, 분실, 운송지연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위탁자”와 “수탁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신해 우선 배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금액, 비율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수탁자”가 따르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책임은 “수탁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지 않는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및 해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수탁자”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총 계약기간(“위탁자”와 “수탁자”가 최초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이 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이 6년 이하인 때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 “위탁자”는 제2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거절의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에 따른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수탁자”에게 계약변경, 계약갱신 등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⑤ “위탁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수탁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는 계약해지 60일 전에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협조한다.

즉, 개정안은 택배기사 과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배송구역 회수(클렌징) 제도, 택배기사의 분류업무 수행 등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의 효력에 우선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표준계약서 사용을 사실상 의무화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을 도모하고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다수의 입법례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며, 임대사업자 등 일부에서 민간에 대하여 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¹³⁾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3) 일부 공공주택사업자, 공공기관,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입법례가 있고, 표준계약서 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도록 하거나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하여야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이하 “표준가맹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표준대리점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대리점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대리점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대리점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제21조제5항에 따른 표준약정서는 제외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경영의 위탁)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소유자·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¹⁴⁾은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안 제32조제2항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택배사업자, 영업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집화 및 배송구역 등 주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행과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 사항일 경우 구속력이 없으므로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 의무화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표준계약서 효력에 우선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 사업자의 경영상 자유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공정거래위원회

1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표준계약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표준약관은 분야별로 표준이 될 계약의 공통사항만을 제시한 경우가 많고, 실제 계약은 표준약관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각 사업자 실태에 맞게 상세한 사항이 추가·변경되기도 하므로, 표준약관과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불공정약관인 것은 아닌데,

개정안과 같이 표준계약서만을 유효하게 하고 별도 계약을 금지하면 민사상 계약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되고, 계약조건 획일화 등 경쟁 저하 우려가 존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한국통합물류협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동법 시행령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에서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을 기 명시하고 있어 동 개정안은 중복규제로 보임.

또한, 동법 상 ‘택배서비스종사자’ 정의에서는 위수탁계약, 근로계약 등 다양한 계약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각 택배사는 배송 물품이나 물류 프로세스 등에 따라 정기화물, 기업택배, 설치택배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런 현황을 반영하여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사항으로 두어 필요 시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계약의 내용을 고정하고 이에 우선하는 계약을 인정하지 않아 택배산업의 비즈니스 구조·계약 구조를 획정하고, 사실상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특정 택배분야 피해 발생이 우려됨

아울러,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기본이나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자율적인 협의에 한계가 발생함.

4. 서비스평가 기준에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의 안전 추가 (안 제35조제2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평가의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의 안전을 추가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① (생략) ② 서비스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u><신설></u>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⑦ (생략)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u>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의 안전</u> 7. -----제6호----- ----- ----- ③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5조제1항15)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과 생활물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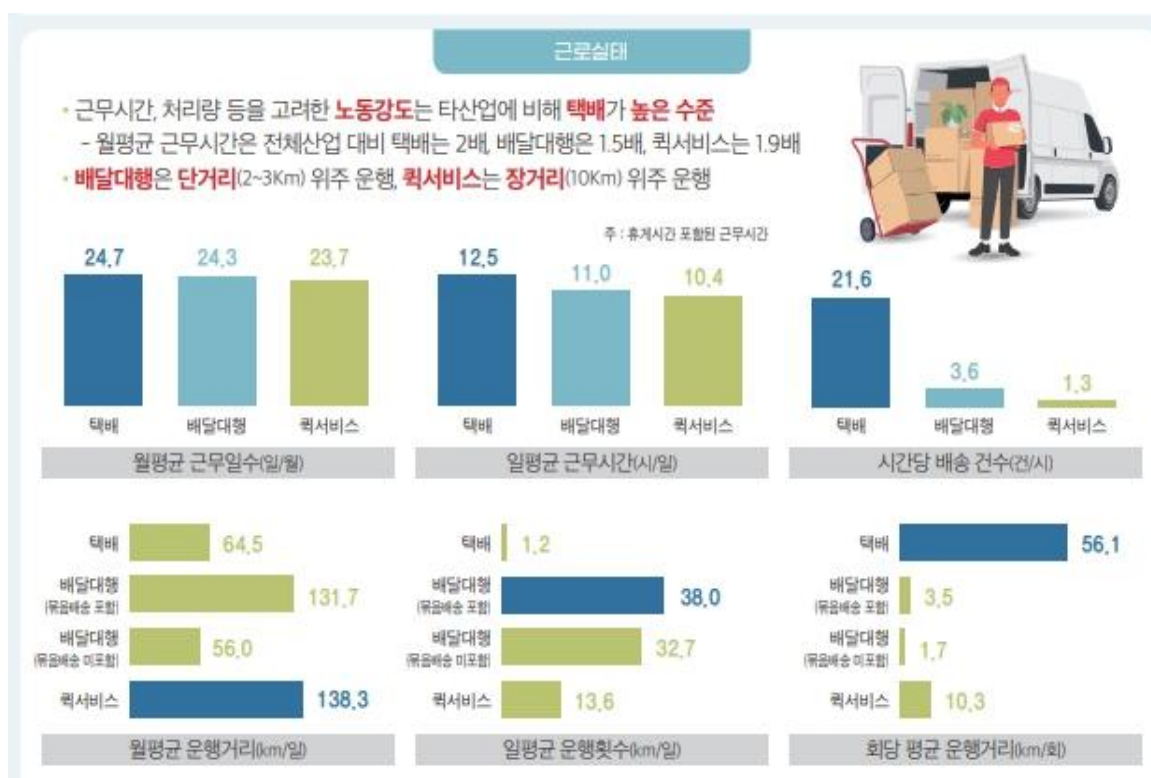
1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근무시간은 전체 산업 대비 택배는 2배, 배달대행은 1.5배, 퀵서비스는 1.9배에 이르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보임.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실태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 】



자료: 국토교통부,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

또한,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에 따를 때 택배종사환경은 운전이 수

반되는 업무 특성상 교통사고, 주·정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도보로 물건을 운반하는 중 미끄러짐 등에 대한 위험성이 크며, 소화물배송대행의 경우에도 연평균 1.7회의 사고·부상을 경험하는 등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무환경의 안전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 】

<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업무상 사고 발생가능성 >



【 그림 2-21 】 업무상 사고 발생가능성(택배서비스 종사자)

< 소화물배송대해종사자의 최근 1년 내 사고·부상 경험 비율 및 횟수 >



【 그림 3-35 】 최근 1년 내 사고·부상 경험 비율 및 횟수 (배달대행 종사자)

자료: 국토교통부,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

이에 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의 안전을 생활물류서비스평가의 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근로환경의 안전을 서비스평가 기준으로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는 현행법 제35조제2항제5호16)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이 이미 서비스평가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서비스평가 기준으로 종사자 근로시간을 추가함으로써 종사자 과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근로환경 안전은 이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통합물류협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동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유무가 상세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1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② 서비스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

또한, 서비스평가의 목적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이나 자칫 종사자 권익보호에만 편중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업무는 업무장소와 업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종사자의 업무시간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5. 택배서비스종사자 법정 업무시간 규정(안 제36조의2 및 제49조 제5호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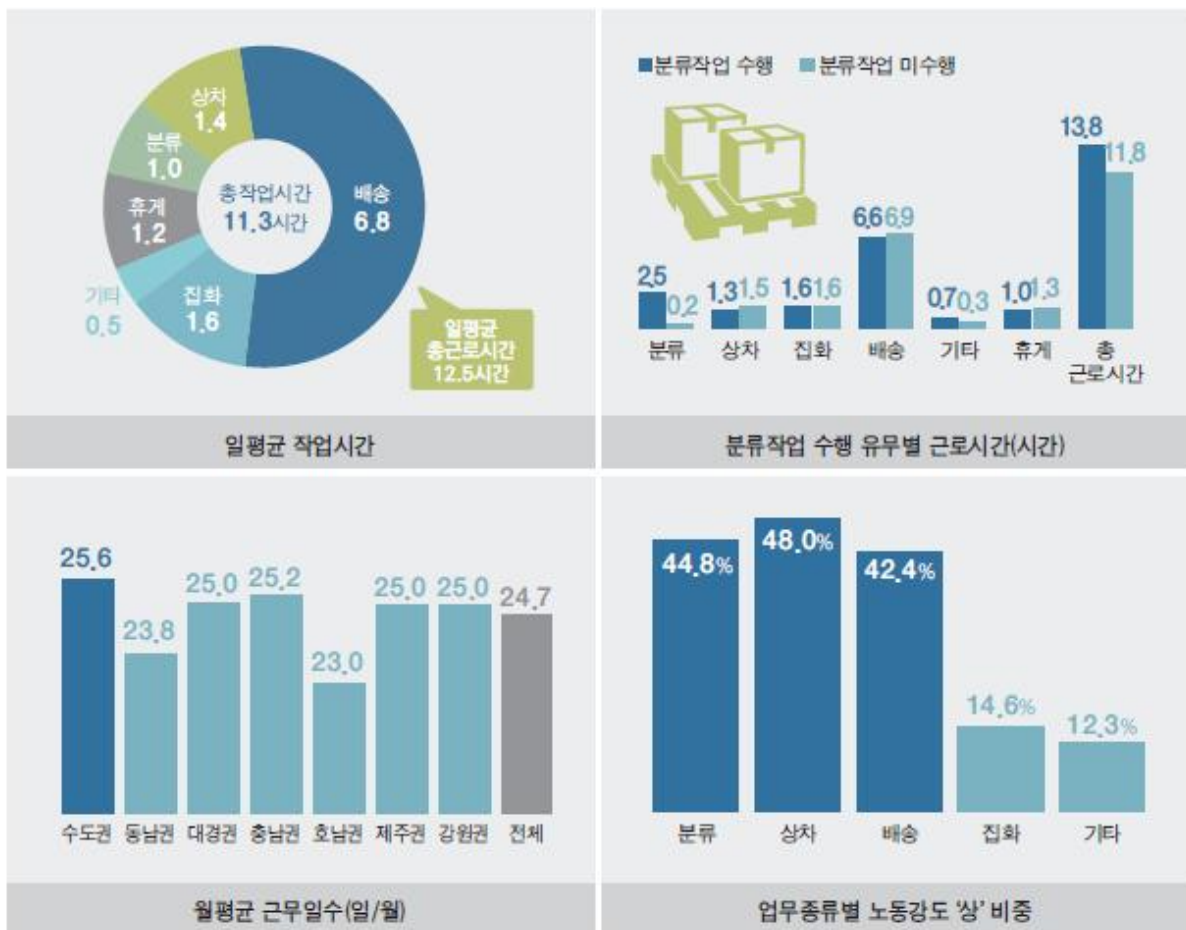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업무시간을 1주 60시간 내로 규정하고, 이를 넘겨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36조의2(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과로예방을 취한 조치)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업무 시간은 1주 60시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벌칙)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6조의2를 위반하여 <u>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일평균 업무 시간은 11.3시간에 달하고, 월평균 24.7일 근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81.4%를 차지하는 분류, 상차, 배송작업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 전반적으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노동강도가 높은 편임.

【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근로실태 】



【 그림 2-9 】 일평균 작업시간 및 업무별 노동강도(택배서비스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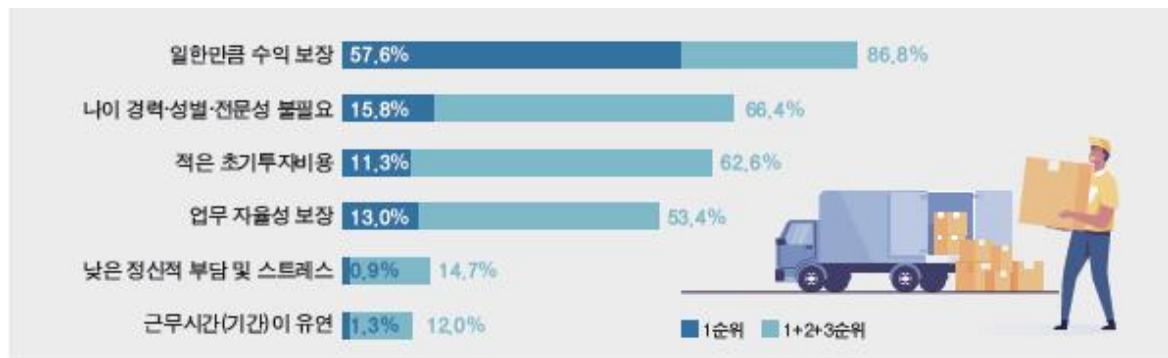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

이처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지난 2021년 6월 2차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 당시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의한 바 있고, 이에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법정 업무시간을 60시간으로 규정하여 과로를 방지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임.

다만, 택배서비스종사자의 다수는 개인사업자로서,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에 따를 때 일한만큼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이 택배 업무를 수행하게 된 가장 큰 동기라는 점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취업동기 】



【 그림 2-5 】 취업 동기(택배서비스 종사자)

자료: 국토교통부,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인데, 「근로기준법」¹⁷⁾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

17)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고 있고,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1주에 12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종사자 업무시간 제한이 과로방지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하여 개인사업자의 업무시간을 제한한 입법례가 없으며,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업무시간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택배종사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반에 대해 노동 관련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에는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의 충돌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한국통합물류협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업무는 업무장소와 업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종사자의 업무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또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 실질 소득 감소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종사자가 60시간 이상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의 매우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택배기사는 별도의 개인사업자로서 영업점과 위탁계약 관계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업무시간을 파악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개정안과 같은 벌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임.

문 의 처
02)6788-5580